

의안번호	2203994
의 퇴 인	조지연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8.
추 계 번호	24B3817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6조(과징금 처분)	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<u>4. 제50조의3¹⁾에 따른 상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<신설></u>	재량규정
	안 제89조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<u>7의2.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<삭제></u> ※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 ²⁾ 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 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함	의무규정

- 1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0조의3(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) 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명령(이하 "상환명령"이라 한다)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(이하 "상환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, 연도별 인정범위,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0조의2(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)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(이하 "평균 배출량"이라 한다)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"평균 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6조(과징금 처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89조(벌칙)	

2. 상세 사유

-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(안 제56조 및 안 제89조)
- 개정안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 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임
 - 현행 형벌 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, 개정안은 해당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5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되,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

[표 1]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

현행	개정안
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(제89조)	해당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5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되,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(안 제56조)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, 법무부에 따르면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 별로 관리하고 있지

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고, 향후 개정안에 따라 제재 조치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법 위반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제작자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징금 수입의 증가 등의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